

인천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54356(본소), 2020가합60009(반소) 판결 [지체상금  
청구 · 공사대금]

---

###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4. 5 선고 2021나15947(본소), 2021나15954(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54356 판결

###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변론 종결**2021. 9. 3.

**판결 선고**2021. 9. 17.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1. 9.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2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2. 26.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C 토지에 노인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9. 3. 11., 준공예정일 2019. 9. 16., 계약금액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100,000,000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지급, 기성부분금은 월 기성), 지체상금률을 1/1,000로 하고, 계약시공기간의 만료가 도래한 경우 일일 계약금액의 1/1,000을 산입해 기성에서 공제하여 지급(특기사항 제46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9. 3. 14.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현장소장의 검사를 거쳐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D에게 자금의 집행을 요청하고, D이 피고 또는 지정된 업체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내역, 원고가 D에게 자금의 집행을 요청한 내역,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다음 표 공사대금 지급액 합계란 기재 1,248,200,000원 외에 합계 24,000,000원을 추가로 직불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27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               |               |               |               |               |             |
|---------------|---------------|---------------|---------------|---------------|-------------|
| -             | -             | 2019. 4. 2.   | 100,000,000   | 2019. 4. 9.   | 100,000,000 |
| 2019. 5. 14.  | 88,900,000    | 2019. 5. 9.   | 88,900,000    | 2019. 5. 15.  | 88,900,000  |
| 2019. 6. 10.  | 268,300,000   | 2019. 6. 10.  | 251,800,000   | 2019. 6. 12.  | 251,800,000 |
| 3,300,000     | 3,300,000     |               |               |               |             |
| 2019. 6. 20.  | 19,800,000    | 2019. 6. 20.  | 13,200,000    | 2019. 6. 26.  | 13,200,000  |
| 19,800,000    | 19,800,000    |               |               |               |             |
| 2019. 7. 10.  | 206,000,000   | 2019. 7. 10.  | 178,500,000   | 2019. 7. 15.  | 178,500,000 |
| 11,000,000    | 11,000,000    |               |               |               |             |
| 16,500,000    | 16,500,000    |               |               |               |             |
| 148,600,000   | 148,600,000   |               |               |               |             |
| 2019. 8. 10.  | 212,000,000   | 2019. 8. 20.  | 30,000,000    | 2019. 8. 20.  | 30,000,000  |
| 4,400,000     | 4,400,000     |               |               |               |             |
| 17,000,000    | 17,000,000    |               |               |               |             |
| 12,000,000    | 12,000,000    |               |               |               |             |
| 174,000,000   | 174,000,000   |               |               |               |             |
| 2019. 9. 10.  | 214,000,000   | 2019. 10. 2.  | 20,000,000    | 2019. 10. 1.  | 20,000,000  |
| 10,000,000    | 10,000,000    |               |               |               |             |
| 10,000,000    | 10,000,000    |               |               |               |             |
| 2019. 11. 10. | 83,000,000    | 2019. 11. 10. | 83,000,000    | 2019. 11. 14. | 83,000,000  |
| -             | -             | 2019. 12. 9.  | 30,000,000    | 2019. 12. 9.  | 30,000,000  |
| -             | -             | 10,000,000    | 10,000,000    |               |             |
| -             | -             | 10,000,000    | 10,000,000    |               |             |
| -             | -             | -             | 6,200,000     | -             | 6,200,000   |
| 합계            | 1,248,200,000 | 합계            | 1,248,200,000 |               |             |

다. 피고는 2019년 12월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 31. 이 사건 공사를 2020. 1. 30.까지 완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0. 1. 31. 공사가 계속 중단되어 있으니 공사를 준공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20. 3. 27. 피고에게, 피고가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이후 주식회사 E(2020. 7. 31.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준공예정일을 지나서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9년 12월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 328,100,000원(= 계약금액 1,700,000,000원 ×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9. 9. 17.부터 계약 해지 통보일인 2020. 3. 27.까지 193일 × 지체상금률 1/1,000)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수급인이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1,700,0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을 2019. 9. 16.로, 지체상금률을 1/1,000로 정하고,

계약시공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일 계약금액의 1/1,000을 산입해 기성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특기사항 제46조)하였고, 피고는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지체상금의 시기는 위 준공예정일의 다음 날인 2019. 9. 17.이다.

3) 다음으로 지체상금의 종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기초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은 2020. 3. 17.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 31. 이 사건 공사를 2020. 1. 30.까지 완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피고에게 최고한 이행기간의 다음 날인 2020. 1. 31.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나) 이 사건 계약기간은 190일(2019. 3. 11.부터 2019. 9. 16.까지)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 중 427,800,000원(= 1,700,000,000원 - 1,27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 중 미지급 공사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잔여 공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면 47일(= 190일 × 427,800,000원 / 1,700,000,000원, 일 미만 버림)이 된다(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약 90%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20. 1. 31.에 잔여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47일)을 더하면 2020. 3. 17.이 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311,100,000원(= 계약금액 1,700,000,000원 × 2019. 9. 17.부터 2020. 3. 17.까지 183일 × 지체상금률 1/1,00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도중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설계가 변경될 때마다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설계 변경 이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소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선정한 시공업자들이 2019년 12월 무렵까지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공사를 일부만 진행하였고, 도시가스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약 90%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계약금액의 74.8%에 불과한 1,272,2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원고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었다는 것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기초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① 설계변경 리스트(을 제1호증)의 경우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가계산서(을 제2호증)의 경우 계약금액이 1,700,000,000원에서 1,8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자가 피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9. 6. 18. 엘리베이터 공사의 설계변경(장애인용/13인승에서 병원용, 장애인용/20인승으로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는 위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21. 2. 4.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도중 수차례 설계가 변경되었다거나, 설계가 변경될 때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설계 변경 이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원고가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소방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자를 직접 선정하였다거나 그 시공업자들이 공사를 지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대로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이 90%에 이른다고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받은 1,272,2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3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90% 정도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공사대금 1,530,000,000원(= 1,700,000,000원 × 90%)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272,2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73,100,000원(= 1,530,000,000원 - 1,272,200,000원, 계산 결과 257,800,000원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기재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설계 변경으로 인해 추가공사대금 15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서 위 잔여 공사대금 중 50,000,000원과 위 추가공사대금 중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 나. 잔여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90%라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받은 1,272,2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1) 원고는 2019. 11. 10.까지 피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액수 그대로 D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D 역시 해당 액수를 그대로 피고 또는 지정된 업체에게 지급하였다.
- 2) 2019. 12. 9. 지급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2019. 12. 9. 피고의 동의를 받아 D에게 합계 56,200,000원의 자금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D은 그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공사를 더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 3)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제기 전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 4) 피고가 시공한 기성공사내역, 기성공사비, 기성률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데 473,569,85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상 잔여 공사대금 427,800,000원(= 1,700,000,000원 - 피고가 지급받은 1,272,200,000원)을 초과한다.

#### **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추가공사대금이 50,000,000원 이상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문지용**

**판사박연주**